#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95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정일영·박지원·김문수

허성무 · 황명선 · 문대림

김성환 • 윤준병 • 이광희

정진욱 • 전진숙 • 김 윤

박용갑 • 민형배 • 이병진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

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50만원"을 "2,900만원"으로, "1,550만원"을 "3,1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 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u>2025년</u>	<u>2030년</u>
<u>12월 31일</u> 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1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 이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 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 2. (생략)
- ② ~ ⑧ (생 략)

<u>80</u>
0만원
1,600만원
- <u>2,900만원</u>
<u>3,100만원</u>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